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16 | 2026.1.19 (2026.1.12~2026.1.1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42억 원 규모의 「'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산업통상부>는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비용을 완화하여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 반영 및 국제물류추진분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등의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게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 · 주제 등을 정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1인)**」 ,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금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게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10인)**」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의원 등 14인)**」 ,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외통위>, <농해수위>, <기후노동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재경위>에서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혜훈)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 확정(기후에너지환경부) 7
- 「'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국방부) 10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부) 11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1
-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1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2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13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1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14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1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1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15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17
-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17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19
-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의원 등 13인) 1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0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2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2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의원 등 10인) 2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의원 등 10인) 2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조세] OECD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Side-by-Side Package」 발표
- [기업지배구조]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포인트 - 제1호 : 정기주주총회 소집전략과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 [조세]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 계획 발표
- [방송통신(TMT)]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국제상사중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
- [노동]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 [공정거래] 2026년 공정위 과징금, 심의절차 관련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 확정 - (제조단계)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 차단 - (유통단계) 빈틈없는 유통감시 체계 구축 - (사용단계)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 조성 - [혁신기반] 인공지능 전환 및 민·산·관 협력 확대	2026-01-15
----------	---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음. 아울러 ‘제1차 종합계획(2021~2025)’ 이행으로 총 43개 품목, 20만여 개의 생활화학제품(연간 제조·수입량 기준 17억여 개)에 대해, 유통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유통망을 감시했음

이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출시, 유통경로, 사용양상 등 다변화하는 정책여건 속에서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사용까지 각 관리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 및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힘

① [제조단계]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선제적 위해차단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全)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미승인 물질과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킴. 또한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② [유통단계] 빈틈없는 유통감시 체계 구축

유통량이 지속 증가하는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

③ [사용단계]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 조성

사용과정에서의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영유아, 화학제품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하는 청년층, 새로운 유형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까지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

④ [혁신기반] 인공지능 전환 및 민·산·관 협력 확대

정부의 민원서류 검토기간을 20% 이상 단축하고, 기업의 법령이행을 돕는 ‘인공지능(AI)-어시스턴트’를 도입하는 한편, 챗봇형 24시간 민원 응대체계를 구축. 민·산·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전성분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등의 ‘더 안전한 제품’ 활동 확산을 위해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제품 감시, 안전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 융합 원천 연구·고온초전도·슈퍼컴·과학 기술 인공지능·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기술 확보에 2,342억 원 투자

2026-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42억 원 규모의 『’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26년도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은 융합 원천 연구, 고온초전도, 슈퍼컴퓨터, 과학 기술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4개 신규사업(209억 원)*이 추진됨

* 고온초전도 자석 실용화 기술 개발(80억 원), 인공지능+과학 기술 혁신 기술개발(45억 원), 차세대 인공지능+과학 기술 기반 기술개발(20억 원), 민관 협력 기반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원천기술 고도화(64억 원)

- ① 융합 원천 연구 분야는 다양한 기술·분야·주체 간 동반 상승효과(시너지)를 통해 미래 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 융합연구를 중점 지원함. 미래 유망 융합기술 개척자(파이오니어) 사업은 10년 내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신 기술형 연구, 도전적 연구 주제에 대한 1단계 해결 가능성 접근·검증 및 2단계 규모 확대(스케일업, Scale-up) 도전형 연구를 이원화하여 계속 지원하며, ’26년에는 미래 신시장 개척·선점, 난제의 과학적 해결을 위한 고난도 융합 원천 연구를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지원하여 투자를 확대할 계획임. 이 외에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연구 성과 간 BRIDGE 융합연구개발 사업, 국내 연구 역량만으로 달성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에 관한 국제 융합연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단계·수준 관점의 융합 원천 연구를 계속 지원
- ② 고온초전도 분야는 ’22년부터 개발해 온 고온초전도 자석 원천기술의 개발·검증을 추진하고, 응용* 분야 시스템 적용 실용화 기술개발을 통한 고온초전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을 신규로 착수

* 생명 과학(바이오)(핵자기공명장치), 에너지(핵융합로), 의료(암 치료 가속기), 교통(항공기 모터)

- ③ 슈퍼컴퓨터 분야는 연구·산업의 거대과학,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핵심 컴퓨팅 기반 시설인 슈퍼컴 6호기를 구축·운용하고, 초고성능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확보,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대형·집단 연구지원 등을 추진
- ④ 과학 기술 인공지능 분야는 생명 과학(바이오), 재료·화학 등 우리나라 강점 분야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한 특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연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반 기술 확보 등을 신규로 착수
- ⑤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분야는 국제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인간 수준의 행동 자율성을 가진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로 착수. 이를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핵심 요소기술을 묶음형(패키지형)으로 통합 개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26-01-17 시행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이 제정(법률 제20012호, 2024. 1. 16. 공포, 2026. 1.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그 지정된 학교의 학칙(學則)에 관한 사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제대군인의 입학연령 상한 연장 및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1.12. ~2026.02.23.

공장의 부대시설 중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입주기업체의 사업개시 신고시 관리기관이 현장 확인 외 비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203-4409, 팩스: 044-203-4739\)](tel:044-203-440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2. ~2026.02.23.
----------	------------------------------------	-----------------------------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5.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등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위한 구제급여 중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전화: 044-201-6816, 팩스: 044-201-6823\)](tel:044-201-6816)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1.12. ~2026.02.23.
-------	--------------------------	-----------------------------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비용을 완화하여 인증 편의성을 제고하고 물류 환경 변화 반영 및 국제물류추진분야 등에 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전화: 044-201-3997, 팩스: 044-201-5601\)](tel:044-201-3997)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1.15.
~2026.02.25.

실손의료보험을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상품으로 개편하여 의료체계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 강화, 공시 확대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 기준에 기본자본을 도입하여 자본의 질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보험과](#) (전화: 02-2100-2964, 팩스: 02-2100-2947)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1.16.
~2026.02.25.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1691, 팩스: 02-2100-169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026-01-15 발의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2026-01-13 발의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2026-01-13 발의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0조 및 제52조)**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01-14 발의

현행법은 사업보고서 등 공시 규정을 두어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중요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도록 하고 있음.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원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은 공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 시행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 공시 대상기간 중의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공시 규정으로 투자자 판단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임원 전과 이력을 포함시키고 그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회사 경영의 중요정보이자 투자판단의 중요요소로서 임원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과거 전과를 공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 및 제160조제1항)**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2026-01-14 발의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2026-01-14 발의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플랫폼에서는 탈퇴 메뉴를 은폐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고, 반복적인 확인이나 부가 정보 입력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탈퇴 방해(dark pattern)’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필요성이 매우 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회원 탈퇴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플랫폼사업자가 탈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즉시 탈퇴 요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

2026-01-16 발의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여 횡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횡수·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제4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01-12 발의

현행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환정책 등을 이유로 기업의 경영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신뢰를 저하시켜 오히려 급격한 외환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외환거래의 통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업 등의 해외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및 제6조)**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6-01-1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소득세 감면 특례는 일몰 규정에 따라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는 중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생활 기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감면 특례가 3년 단위로 반복 연장되는 구조는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수 인재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 특례가 일몰될 경우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면 중단되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되, 기존과 같은 3년 단위의 단기 연장이 아닌 5년 단위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6-01-14 발의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2026-01-15 발의

현행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도록 하고,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2026-01-16 발의

현행법은 무역보험 및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가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위권 행사, 구상·채권관리 등의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세무관서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최근 무역거래 및 금융거래의 수단으로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공사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무역보험 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적정한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와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역보험제도의 재정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제1항)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2026-01-13 발의

오늘날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개방·활용하여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국가 생존전략이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 됨. 이에 공공데이터의 개방·활용 촉진과 함께 이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 민주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에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제공 및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공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제한 요인 평가제도와 가명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개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용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한 데이터가 제공되도록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데이터 개방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2026-01-12 발의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로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2026-01-15 발의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형사처벌·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을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7인)

2026-01-15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의원 등 13인)

2026-01-13 발의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 약 805만 개 중 중소기업이 약 804만 개로 99.9%를 차지하고, 전체 종사자 약 2,341만 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약 1,896만 명으로 81.0%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 매출액 추정치 약 7,490조 원 중 중소기업 비중이 약 3,309조 원으로 4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업 수 기준으로 사실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임을 보여주며, 고용·매출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함

그런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사망 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업 지배구조가 불안정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등으로 흑자도산이나 기업 매각이 발생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남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기업 존속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2026-01-12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근로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026-01-13 발의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2026-01-13 발의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 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감축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6조의4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2026-01-13 발의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특성이 있어,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하더라도 임대료 부담이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민간투자 유인과 보급 속도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6조제5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4인)

2026-01-14 발의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1인)

2026-01-14 발의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에 의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2026-01-15 발의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석탄·석유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체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탄소감축 흐름에 동참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대량의 수소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원전 전력을 이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것임

이러한 원전 활용 청정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수소특화단지를 말함)에 인접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이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제급전의 원칙'에 따르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현행법은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서지역, 재생에너지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등의 경우만 전력시장외거래, 즉 전력 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제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수소특화단지에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사용되는 대규모 전력을 값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 및 탈탄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및 제8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2026-01-12 발의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재경위	전체회의	1/19(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기획예산처장관 이해훈) 인사청문회
외통위	법안소위	1/20(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20(화) 14:00	- 법안 등 안건 의결, 현안 질의
행안위	전체회의	1/19(월) 10:00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관련 현안보고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소위	1/20(화) 10:00	- 법안 심사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21(수) 14:00	-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등 및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	간담회	1/20(화)	- 현장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
	청문회	1/22(목) 10:00	- 국정조사 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9(월) 14:00	공직자 및 공직 수탁행위의 윤리 강화 방안	조정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1(수) 10:00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토론회	박수영·정태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1/21(수) 10:30	공기열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김소희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1/22(목) 10:00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3차 〈정책〉	김정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3(금) 14:00	독서국가 선포식: AI 시대 독서국가로 가는 길	김영호·고민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1/21(수)	「금주의 서평」 제2026-3호(통권 제762호) 발간	국회도서관	
	1/22(목)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호(통권 제25호) 발간		
	1/22(목)	「NABO Focus」 제132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1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3(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89호(2026-1호)	국회도서관	
	1/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2호(통권 제76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월)	조세	OECD 글로벌최저한세(Pillar 2) 「Side-by-Side Package」 발표
1/12(월)	기업지배구조	2026년 정기주주총회 핵심 체크포인트 - 제1호 : 정기주주총회 소집전략과 개정상법에 따른 정관 개정
1/14(수)	조세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상시 집중점검 계획 발표
1/14(수)	방송통신(TMT)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14(수)	국제상사중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분쟁해결절차로서의 중재
1/15(목)	노동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1/16(금)	공정거래	2026년 공정위 과징금, 심의절차 관련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